

## 인민보안단속법(구 사회안전단속법) 개정과 북한의 주민통제 강화

이 규 창 (북한인권연구센터 부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1-31

북한이 최근 인권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 오고 있는데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구 사회안전단속법과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 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인민보안단속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해 말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 조문이 공개되면서 북한이 사회안전단속법을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도 대폭 개정한 사실이 올해 초부터 알려지기 시작하였다.<sup>1)</sup> 북한이 구 사회안전단속법을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법령 명칭을 바꾼 이유는 종전의 사회안전부(사회안전성)가 인민보안성(현 인민보안부)으로 개칭된 것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안전단속법은 1992년 12월 28일 제정되어 1999년 3월 24일 개정된 바 있다. 이때도 사회안전단속법이란 명칭을 유지하였다. 이후 2001년 9월 13일, 2002년 5월 22일, 2005년 7월 26일 각각 개정되었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사회안전성이 2000년에 인민보안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을 볼 때 2001년 9월 13일 개정 시에 법령 명칭이 변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민보안부는 치안유지를 주 임무로 하는 기관으로 우리의 경찰 기구에 해당된다. 인민보안부는 종래 사회안전부, 사회안전성으로

1) 인민보안단속법의 조문은 국가정보원이 2010년 발간한 『북한법령집(상)』 또는 법제처 홈페이지→북한법제정보센터→남북법제→법률목록→북한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리다가 2000년에 인민보안성으로 개칭되었고, 인민보안성은 2010년 4월 국방위원장 산하의 인민보안부로 격상되었다.

개정된 내용을 봤을 때 인민보안단속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특히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측면에서 규정상으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인민보안단속 방법 및 절차에 있어 이러한 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인민보안단속법은 ‘인권’을 명시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 단속 과정에서 ‘인권’을 유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사회안전기관이 사회안전단속에서 세도를 쓰거나 직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을 뿐 인권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었다(제6조). 2009년 북한 헌법에 인권이 명시되기 이전 개별 법령에 인권이 명시된 것은 인민보안단속법 외에도 변호사법(제2조)과 형사소송법(제5조)이 있다.

둘째, 인민보안원이 법질서 위반자의 신분을 확인할 경우 먼저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단속 이유를 알려 주도록 개정하였다(제42조).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내용은 구 사회안전단속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제30조).

셋째, 법질서 위반자를 억류하였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알리고, 억류된 자의 가족과 직장 또는 거주지 사무소에도 알린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제49조).

넷째, 산전 3개월, 산후 7개월까지의 여성과 중병, 전염성질환환자는 억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50조제3항). 구 사회안전단속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제34조).

다섯째, 구 사회안전단속법 제36조는 단속된 자의 조사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보안원이 단속된 자의 몸과 입은 옷에서 법질서 위반 행위와 관련 있는 흔적, 특징, 물건을 찾아내기 위해 검신할 경우 2명의 입회인을 세운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제52조 제2호).

이상에서 언급한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인민보안단속법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첫째, 법의 목적 내지는 법의 사명에서 인권이 후퇴하고 ‘제도와 질서의 준수’가 강조되고 있다.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보위’와 함께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에 비해 인민보안단속법은 인민의 권리와 생명재산의 보호는 빠진 채 “인민보안단속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법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저지시키고 정확히 조사처리”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명하고 있다(제1조).

둘째, 인민보안단속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단속행위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구 사회

안전단속법이 제8조부터 제28조까지 21개 조문에서 단속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 인민보안 단속법은 제8조부터 제40조까지 33개 조문에 달하고 있다. 약 50%가 증가한 것이다. 구 사회안전단속법에 규정된 단속 행위는 <부록 1>과 같은데 이 행위들은 인민보안단속법에 의해서도 규제되고 있다. 인민보안단속법은 여기에 단속행위들을 추가하였다<부록 2>. 기관·기업소·단체의 설비 또는 자재를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행위, 승인을 받지 않고 매대에서 돈벌이를 하는 행위, 농기계나 소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행위,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전반까지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구 사회안전단속법은 법 위반자를 단속한 경우 24시간 이내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비해(제32조), 인민보안단속법은 현지 또는 필요한 장소에서 조서를 작성한다고만 할 뿐 시간의 제약을 두고 있지 않다(제46조).

법령 명칭이 ‘사회’안전단속법에서 ‘인민’보안단속법으로 바뀐 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에서 북한 주민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통제로 방향이 바뀌고 있음을 말해 준다. 관심이 가는 대목은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과 김정은 후계구도와의 연관성이다. 인민보안단속법이 최종 개정된 시점이 2005년 7월 26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인민보안단속법을 개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적어도 북한의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인민보안단속법을 이용하여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려 들 것은 불문가지이다. 인민보안단속법과 행정처벌법, 형법은 북한 당국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 수단이다. 북한은 형사책임을 추궁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인민보안단속법을 적용하고 있다(제7조). 단속된 자는 행정처벌법에 따른 행정처벌을 받게 된다(행정처벌법 제6조 및 제7조). 행정처벌법은 ① 경고, 엄중경고, ②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③ 강직, 해임, 철직, ④ 벌금, ⑤ 중지, ⑥ 변상, ⑦ 몰수, ⑧ 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을 행정처벌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제14조). 이 중 무보수노동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파악된다. 요컨대, 인민보안단속법의 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북한 주민이 무보수노동을 비롯한 행정처벌과 행위의 정상이 중한 경우에는 노동단련형 및 노동교화형 등의 형사처벌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를 방지 및 개선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응이 강구되어야 한다.

### 〈부록 1〉 기존(구 사회안전단속법)의 단속 행위

- 사회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 국가의 정치적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
- 설비와 원료·자재·생산물을 되는대로 관리하여 못쓰게 만들거나 그것을 유용·낭비·비법 처분하거나 또는 계획실행정형을 거짓보고하거나 수출입질서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
- 상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거나 정해진 구매 가격을 위반하는 등의 상업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외화별이가지가 없이 외화별이를 하거나 외화를 팔고 사는 등의 외화별이·외화관리 질서 위반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건달을 부리거나 정해진 노동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의 노동행정질서 위반 행위
- 퇴폐적인 음악·춤·그림·사진·도서·녹화물·녹음물 등을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만들거나 복사·유포하는 행위, 패싸움·불량·자적 행위를 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시키거나 그 이용질서를 위반 하는 등의 사회공중질서 위반 행위
- 불법적으로 의료행위를 하거나 약품을 만들어 파는 행위
- 여행 질서, 걸어 다니는 질서 위반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와 공민이 기밀자료와 인쇄설비의 보관·이용 질서를 위반하거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경비질서 위반 행위
- 공민등록·숙박·등록·살림집 이용 질서 위반 행위
- 운전기재를 등록하지 않거나 기술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운전자격이 없는 자가 운전기재를 운전하는 하는 등의 교통안전질서 위반 행위
- 승인 없이 도로를 건설하거나 막거나 또는 교통안전시설을 갖추지 않는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에서 화재를 막기 위한 시설 또는 기재를 갖추지 않거나 승인 없이 건물 또는 인화물질 보관시설을 건설·이용하는 행위
- 화약류, 총기류, 방사성 및 독성 물질의 취급질서 위반 행위
- 내압설비와 사람이 타는 권양설비, 나룻배를 검사받지 않거나 그 운영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큰물피해, 지진피해, 물에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위
- 금지된 시기와 장소에서 또는 금지된 방법으로 이로운 동식물을 잡거나 채취하는 행위, 토지를 남용하는 행위, 산림을 남벌·도벌 하는 행위, 물·공기·토양을 오염시키는 등의 국토관리·환경보호 질서 위반 행위
-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과 공민의 헌법적 권리, 생명재산을 침해 행위

### 〈부록 2〉 인민보안단속법에 추가된 단속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설비, 자재를 불법적으로 빼돌리거나 승인 없이 음식물 매대 같은 봉사시설을 갖추어놓고 돈벌이를 하는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종업원으로 불법적으로 돈벌이를 조직하는 행위
- 농기계부림소 관리를 바로 알지 않거나 비료, 농약 등의 영농물자 보관이용 질서 위반 행위
- 불법적으로 전열기를 사용하는 등의 전기 낭비 행위
- 기관기업소단체의 노력을 다른 일에 망탕 동원시키거나 계획된 노력을 제때에 동원시키지 않은 행위
- 미신행위를 날조하거나 사실을 날조왜곡하거나 요언(妖言)을 퍼뜨리는 행위
- 컴퓨터, 인쇄기, 수자식촬영기, 반도체라디오가 달리 녹음기의 등록이용 질서 위반 행위
- 여성을 희롱하거나 남의 옷에 더러운 것을 발라놓는 행위
- 철길, 고속도로로 걸어 다니거나 관광도로와 그 주변에서 공중도덕과 제정된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 열차, 전차, 버스에 설치한 시설을 파손시키거나 정상적 운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장사, 물물교환을 목적으로 술을 만들거나 또는 국가가 금지시킨 물건을 팔고 사거나 시장 밖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
- 불법적으로 밀수밀매하거나 허가 없이 국경을 넘나드는 행위
- 도적물건을 숨겨주거나 또는 팔아 주거나 사는 행위
-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행위
- 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거나 충고를 주는 자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반항, 모욕하는 등의 행위